## [서식 예] 농지취득자격증명


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2.7.18>

제 호

## 농지취득자격증명

성 명(명 칭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주 소			
전화번호			
소 재 지	지번	지목	면적(m²)
	주 소 전화번호	주 소 전화번호	(법인등록번호) 주 소 전화번호

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「농지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 • 구청장 • 읍장 • 면장

직인

## 유의 사항

- 1.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「농지법」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2.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농지법」제11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